

본 안산대학교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는
"사립학교법시행령" 제14조 제4항에 의거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
제고함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에게 재정운영의 신뢰와 공감대가
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15년 02월 23일

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임 승 룡

안산대학교 총 장 김 주 성